

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스토킹범죄  
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 월 30 일

여 수 시 장

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1830호

붙임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1부.

##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여수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를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,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되,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3.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업)**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
2.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

3.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업

4.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위탁 등)**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8조(신고체계의 마련)**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**제9조(비밀 누설 금지)**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